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26 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현행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심의기구로 교육청과의 현안업무 협의에 한계가 있어 사안에 따라 협의 또는 심의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그간 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의 제목을 교육지원의 대상에서 적용범위로 변경하고, 적용 범위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추가 (안 제2조)

나.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 지원위원회에서 현안업무 협의가 가능하도록 개정 (안 제4조, 제7조, 제10조)

다. 교육청 직제개정에 따른 위원 명칭 등 변경 (안 제11조)

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조항 정비
(안 제12조, 제14조)

마.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에 따른 “위원 이해충돌방지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 신설 (안 제12조의2)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조 :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12 팩스 032-440-87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 과정을 말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하여 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간 교육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제1항 중 “심의위원회 심의”를 “교육지원위원회 심의 또는 협의”로 한다.

제6조 중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를 ”교육청“으로 한다.

제7조 단서 중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을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교육지원위원회”로 하고, “교육지원에”를 “교육지원 및 협력 사항에”로, “심의하기”를 “심의 또는 협의하기”로, “인천광역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교육지원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시장이”를 “시장이 시와 교육청의 교육현안에 대하여 협의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② 위원회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④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협의회는 공동회장 2명과 시와 교육청의 예산편성관련 팀장 및 안전관련 팀장, 시 교육지원관련 팀장, 제16조에 따른 교육협력관으로 구성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교육지원의 대상) 이 조례의 교육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교육감이 인가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 과정을 말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하여 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간 교육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교육지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내용, 지원규모와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제10조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지원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4조(교육지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① ----- ----- - 교육지원위원회 심의 또는 협의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소요경비의 부담)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군·구의 재정부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해당 군수·구청장	제6조(소요경비의 부담) ----- -----교육청----- ----- ----- ----- -----

현행	개정안
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목적외 사용금지) 전출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전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u>교육지원심의위원회</u> 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2>	제7조(목적외 사용금지) ----- ----- ----- -----, <u>교육지원위원회</u>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u>교육지원심의위원회</u> 설치와 기능) 시장은 <u>교육지원에</u>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하기</u> 위하여 <u>인천광역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u>교육지원위원회</u> 설치와 기능) ----- <u>교육지원 및 협력 사항에</u> ----- ----- <u>심의 또는 협의하기</u> ----- <u>인천광역시교육지원위원회</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u>시장이</u>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1-2>	4. ----- <u>시장이 시와 교육청의 교육현안에 대하여 협의가</u> ----- -----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의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1-2>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 ----- ----- ----- ----- -----
1. 당연직 위원은 시의 기획조정실장,	1. -----

현행	개정안
청소년 업무 소관국장과 교육청의 <u>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장</u>으로 한다. 2. (생략) ② ~ ③ (생략) 제12조(회의 등) ① ~ ③ (생략) ④ <u>상정안전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2-1-2></u> ⑤ (생략) <u><신설></u>	----- ----- <u>교육국장, 행정국장</u> -----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u>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u>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u> <u>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u> <u>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 <u>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u> ② <u>위원회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u>

현행	개정안
제14조(교육실무협의회) ① (생략) ② <u>협의회는 공동회장 2명과 시와 교육청의 예산관련 담당 사무관 및 제16조에 따른 교육협력관으로 구성하고, 안전 관련 담당 사무관을 배석자로 한다.<개정 2012-1-2></u> ③ (생략)	<u>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 ③ <u>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 ④ <u>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u> 제14조(교육실무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u>협의회는 공동회장 2명과 시와 교육청의 예산편성관련 팀장 및 안전관련 팀장, 시 교육지원관련 팀장, 제16조에 따른 교육협력관으로 구성한다.</u> ③ (현행과 같음)

